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허1925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피 고 주식회사 이비카드

변 론 종 결 2016. 8. 23.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1. 25. 2015당354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 (1) 발명의 명칭 : 신용카드 선승인 충전을 이용한 선불 모바일 전자화폐 사용금액의 신용결제 방법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7. 24./ 2013. 4. 23./ 특허 제1258831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3】 각 삭제

【청구항 4】모바일 카드가 내재되어 있는 모바일 단말, 선불카드사 서버, 신용카 드사 서버로 구성된 신용카드 연계형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선불카드사 서버 가 결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 터 전달받은 설정된 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인 사용한도 금액과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결제할 신용카드 정보, 상기 모바일 카드 정보. 상기 모바일 카드의 USIM 정보 중 상기 USIM 정보와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 로부터 선승인 완료를 통보받으면,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잔여 충전 금액에 대한 환불 이 요청되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모바일 단말에 대응되는 선승인 내역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선승인이 취소되면. 상기 모바일 단말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 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매입승인이 통보되면, 상기 모바일 단말 의 USIM 정보와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한도 금 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 로부터 선승인 완료를 통보받으면,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을 상기모바일 카드로 청구하는 결제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결제 단말기는 상기 모바일 카드와 거래한 거래 내역을 설정된 주기 간격으로 상기 선불카드사 서버로 전송하며(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는 상기 결제 단말기로부터 상기 모바일 카드와 거래한 거래 내역을 전송받기 이전에 수행됨(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결제 방법(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승인 내역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단계 이전에,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설정된 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인 사용한도 금액과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결제할 신용카드 정보, 상기 모바일 카드 정보, 상기 모바일 단말의 USIM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 상기 모바일 카드 정보와 상기 USIM 정보를 대응시켜 저장하며,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USIM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USIM 정보와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선승인 완료를 통보받으면,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는 단계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결제 방법.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단말의 USIM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 이전에, 상기 모바일 단말은 이동통신사 서버로부터 신용카드 연계형 전자 화폐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결제 방법.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한도는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내에서 하나를 설정하며, 상기 모바일 단말은 현 시점이 잔여 충전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시점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결제 방법.

【청구항 8】모바일 카드가 내재되어 있는 모바일 단말, 선불카드사 서버, 신용카 드사 서버로 구성된 신용카드 연계형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에서, 상기 선불카드사 서버 가 결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구성요소 1'과 같다).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전달 받은 설정된 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인 사용한도 금액과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결제할 신용카드 정보, 상기 모바일 카드 정보, 상기 모바일 카드의 USIM 정보 중 상기 USIM 정보와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구성요소 2'와 같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선승인 완료를 통보받으면,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는 단계('구성요소 3'과 같다);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잔여 충전 금액에 대한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신용 카드사 서버로 상기 모바일 단말에 대응되는 선승인 내역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단계 (이하 '구성요소 10'이라 한다); 상기 선승인이 취소되면, 상기 모바일 단말이 사용한 금 액에 대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을 요청하는 단계('**구성요소** 5'와 같다); 상기 신 용카드사 서버로부터 매입승인이 통보되면, 상기 모바일 단말의 USIM 정보와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상기 모바일 단말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선승 인을 요청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선승인 완료를 통보받으면, 상기 모바일 단말이 사용한 금액을 상기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는 단 계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을 상기 모 바일 카드로 청구하는 결제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결제 단말기는 상기 모바일 카드와 거래한 거래 내역을 설정된 주기 간격으로 상기 선불카드사 서버로 전송하며('구성요소 8'과 같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는 상기 결제 단말기로부 터 상기 모바일 카드와 거래한 거래 내역을 전송받기 이전에 수행됨('**구성요소 9**'와 같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화폐 결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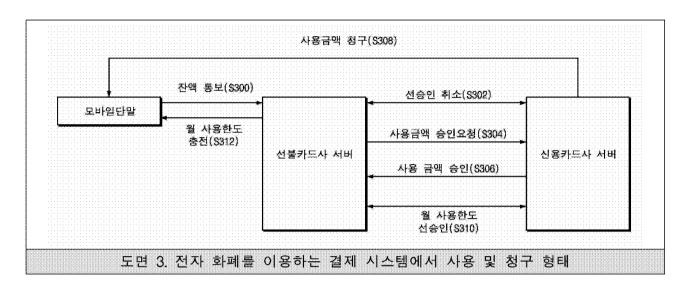
(4) 주요 내용 및 도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용카드 선승인 충전을 이용한 선불 모바일 전자화폐 사용금액의 신용결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모바일 카드가 내재되어 있는 모바일 단말, 선불카드사 서버, 신용카드사 서버로 구성된 신용카드 연계형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에서 선불카드사 서버가 결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선불형 전자 화폐 기능을 이용하면서도 신용카드처럼 설정된 주기 단위로 사용 금액을 추후 청구하는 방식의 전자 화폐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전자 화폐 결제 방법은 ① 모바일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설정된 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인 사용한도 금액과 사용한도 금액을 결제할 신용카드 정보, 모바일 카드 정보, 모바일 카드의 USIM 정보 중 USIM 정보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와,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선승인 완료를 통보받으면, 사용한도 금액을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는 단계, ② 모바일 단말로부터 잔여 충전 금액에 대한 환불이 요청되면, 신용카드사 서버로 모바일 단말에 대응되는 선승인 내역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단계와, 선승인이 취소되면, 모바일 단말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 단말기로부터 모바일 카드와 거래한 거래내역을 전송받기 이전에 수행되도록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③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매입승인이 통보되면, 모바일 단말의 USIM 정보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매입승인이 통보되면, 모바일 단말의 USIM 정보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와,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선승인 완료를 통보받으면, 사용한도 금액을 모바일 카

드에 충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나. 확인대상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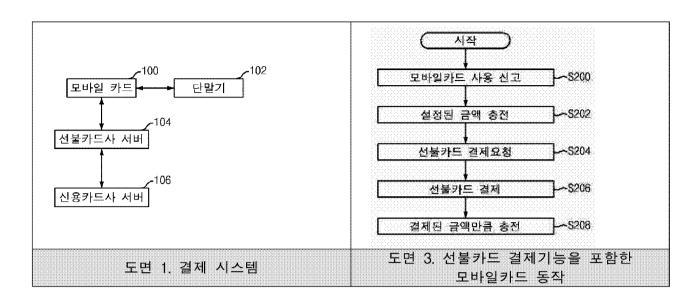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후불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3호증)

2010. 12. 15. 공개되어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10-0131414호에 게재된 '선불카드와 결합된 후불결제 방식의 모바일 카드 구현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1은 모바일카드(100), 단말기(102), 선불카드사 서버(104), 신용카드사 서버(106)를 포함하는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모바일 카드에 설정된 금액을 항상 충전 하도록 함으로써 모바일 카드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불카드 결제 기능 을 이용하여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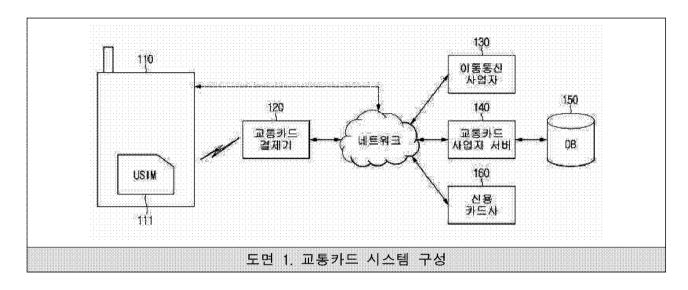
선행발명 1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바일카드(100)가 선불카드사 서버(104)에 모바일카드(100) 사용을 신고(S200)하는 단계, 선불카드사 서버(104)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최초 설정 금액을 충전(S202)하는 단계, 선불카드 결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모바일카드가 단말기로부터 거래 금액에 대해 선불카드 결제를 요청받는 단계(S204), 거래 요청금액을 선불카드 결제 기능으로 결제(S206)하는 단계 및 설정된 시간단위로 선불카드 결제 기능으로 결제한 총 거래 금액을 선불카드사 서버로부터 충전받는 단계(S20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선행발명 2(을 제4호증)

2012. 4. 13. 공개되어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35026호에 게재된 '선불 방식 교통카드를 이용한 후불 방식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2는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USIM 카드를 구비한 휴대 단말기(110), 교통카드 사업자 서버(140) 및 DB(150), 신용카드사 서버(160), 결제하는 교통카드의 키 값과 결제금액을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또는 일정기간 간격으로 교통카드 사업자 서

버로 전달하는 교통카드 결제기(120)를 포함한 교통카드 시스템에 있어서, 휴대 단말기에 탑재된 선불 방식 교통카드를 후불 방식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때 교통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불 방식과 후불 방식을 상호 전환 가능하도록 서비스하는 방법과 선불 금액 충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후불 방식만을 사용하는 서비스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자가 후불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 하지 않을 경우에 교통카드 사업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 통카드 사용자가 후불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미리 설정하거나 교통카 드 사용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후불 방식의 거래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함 께 제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1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승인 취소'에 관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고,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548)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25.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일부에 관하여 동일 내지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 (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인대상발명 중 구성요소 B에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사용자 동의절차에 관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구성요소 E에 캐시비 서버가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자 단말로부터 제공받는 과정 없이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달한다고만 되어 있는 점, 구성요소 H에 모바일 단말과 결제 단말기 사이의 비용 청구에 대한 구성이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 가능 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검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후불형 모바일 교통(캐시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신청자의 신용카드 이용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 및 '해당 신용카드 자체의 잔여 사용한도가 12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루 3만 원의 사용한도에서 모바일 단말의 IC카드를 후불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 3만 원의 사용한도를 제공할때 해당 신용카드 자체의 잔여 사용한도가 감소하지 않고 사후에 취소할 필요가 없는 '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 다.항의 (1) 구성요소별 대비표 기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그 '인증' 방식에 관한 구성요소들(구성요소 B, D, E, F, G, H)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승인' 방식과의 차이점을 추출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이다.

덧붙여,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B에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사용자 동의 절차에 관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하루 사용한도 금액을 3만 원으로 고정하고 있어 그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또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H에 모바일 단말과 결제 단말기 사이의 비용 청구에 대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도 지적하나,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 IC카드 거래시 결제 단말기가 사용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결제 단말기의 신호에 의해서 모바일 단말의 IC카드에 저장된 잔여 한도금액 정보가 반영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 나아가 구성요소 H에서 결제 단말기가 대금을 청구하는 대상을 '캐시비 서버'로 기재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결제단말기가 대금을 청구하는 대상이 '모바일 카드'인 것과 대비될 수 있다.

(3) 검토결과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요소별 대비 및 공통점과 차이점

구성 요소	이 사건 제4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1 (A)	모바일 카드가 내재되어 있는 모바일 단	모바일 단말(도면의 'APP' 및 'USIM'), 캐
	말, 선불카드사 서버, 신용카드사 서버로	시비 서버(도면의 '캐시비 Server') 및 신
	구성된 신용카드 연계형 전자화폐 결제	용카드사 서버(도면의 '롯데카드') 로 구
	시스템에서, 상기 선불카드사 서버가 결	성된 후불결제서비스 시스템에서, 상기
	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캐시비 서버가 결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평가	[동일]	

구성 요소	이 사건 제4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상기 모바일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설정된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결제에 사용할
	기간 동안 사용할 금액인 사용한도 금액	신용카드정보, 캐시비카드번호, IC카드식
	과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결제할 신용카	별정보를 전달받으면, 신용카드사 서버로
	드 정보, 상기 모바일 카드 정보, 상기	상기 신용카드정보, 상기 IC카드식별정보
	모바일 카드의 USIM 정보 중 상기 USIM	및 미리 설정된 기준금액 정보를 전달하
	정보와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	면서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성 여부 및 해
	카드사 서버로 제공하며, 상기 <u>사용한도</u>	당 신용카드에 대해서 남아있는 신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숭인 을 요청하는 단계	가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2 (B)		<u>인중을 요청</u> 하는 단계(상기 캐시비 서버
		는 상기 IC카드에 충전할 사용한도 금액
		정보를 그 값이 정해진 상태로 이미 보유
		하고 있으며 상기 사용한도 금액 정보를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전달받지 않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달하지 않으
		며, 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u>인증만 요청하고 선승인을 요청하</u>
		지 않으며, 인증은 요청 및 완료되더라도
		당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에 영향을 주지
		<u>않음</u>)
	[차이점 1]	
평가	구성요소 2는 '신용카드사 서버에 <u>사용한도 금액에 대하여 선숭인을 요청</u> '하는 것	
	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신용카드사에 <u>신용카드의 유효성 및 신</u> 용한도를 확인하는 인증 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인증 완료를
3 (C)	를 통보받으면,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	통보받으면,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기 모바일 카드에 충전하는 단계	모바일 단말의 IC카드에 충전하는 단계;
평가	[동일]	
4 (D)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잔여 충전 금액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상기 IC카드에
	에 대한 환불이 요청되면, 상기 신용카드	남아있는 잔여 한도 금액에 대한 정보를
	사 서버로 상기 모바일 단말에 대응되는	전달받는 단계(상기 모바일 단말의 어플

구성 요소	이 사건 제4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선숭인 내역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단	리케이션이 상기 잔여 한도 금액 정보를
	계	상기 캐시비 서버로 전달하고, 상기 캐시
		비 서버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앞서
		이루어진 <u>인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지</u>
		않음)
	상기 선승인이 취소되면, 상기 모바일 단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에 사
	말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상기 신용카드	용할 신용카드정보, 상기 IC카드식별정보
	사 서버로 <u>매입승인을 요청</u> 하는 단계	및 상기 미리 설정된 기준금액 정보를 전
		달하면서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성 및 해
		당 신용카드에 대해서 남아있는 신용한도
5		가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E)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상기 캐시비 서버
(-)		는 상기 사용한도 금액 정보를 상기 신용
		카드사 서버로 전달하지 않고, 상기 캐시
		비 서버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인증
		만 요청하고 선숭인을 요청하지 않으며,
		인증은 요청 및 완료되더라도 당해 신용
		카드의 사용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매입승인이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인증완료를
	통보되면, 상기 모바일 단말의 USIM 정보	통보받으면 상기 모바일 단말의 IC카드에
	와 사용한도 금액을 상기 신용카드사 서	저장되는 금액을 상기 <u>사용한도 금액으로</u>
6	버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한도 금액에 대	복원하는 단계(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F)	한 <u>선승인을 요청</u> 하는 단계	모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충전승
		인을 통보하고, 상기 모바일 단말의 어플
		리케이션이 상기 IC카드에 저장되는 금액
		정보를 상기 사용한도금액으로 복원함)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선승인 완료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복원된 금액정보
7	를 통보받으면, 상기 사용한도 금액을 상	를 전달받아 매입데이터를 생성하며, 생
(G)	기 모바일 카드에 <u>충전</u> 하는 단계를 포함	성된 매입데이터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
	하며,	로 전달하여 <u>매입승인을 요청</u> 하는 단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4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차이점 2]	
평가	구성요소 4 내지 7은 '선 승인 취소 , 사용금	금액에 대한 매입승인 요청, 새로운 선승인
	요청, 재충전 단계' 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들에는 '선숭인 취소,	
	새로운 선숭인 요청 단계'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을 상기	상기 모바일 단말의 IC카드와 거래한 거
	모바일 카드로 청구하는 결제 단말기를	래 내역 정보를 상기 캐시비 서버로 전달
	포함하며, 상기 결제 단말기는 상기 모바	하고 상기 캐시비 서버로 대금지급을 청
8 (H)	일 카드와 거래한 거래 내역을 설정된 주	구하는 결제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결
(11)	기 간격으로 상기 선불카드사 서버로 전	제 단말기는 상기 거래 내역 정보 및 대
	송하며,	금지급청구를 일정한 주기로 상기 캐시비
		서버로 전송하며,
평가	[동일]	
9 (I)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승인을 요청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숭인을 요청
	하는 단계는 상기 결제 단말기로부터 상	하는 단계는 상기 결제 단말기로부터 대
	기 모바일 카드와 거래한 거래 내역을 전	금지급청구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수행됨
	송받기 이전에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비 서버가 결제를
	전자 화폐 결제 방법	수행하는 방법
평가	[동일]	

(2) 차이점들이 균등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 113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용카드 '선 승인' 충전을 이용한 선불 모바일 전자화폐 사용금액의 신용결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별도의 충전행위 없이 선불형 전자 화폐 기능을 이용하면서도 신용카드처럼 설정된 주기 단위로 사용 금액을 추후 청구하는 방식의 전자 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그 주된 과제로 하며(문단번호 [0001], [0006], [0007]), 그 해결을 위해 사용한도 금액의 선승인 요청 및 그에 따른 충전 단계, 잔여 충전 금액 환불, 선승인 취소 및 신용카드사서버로의 매입승인 요청 단계, 사용한도 금액의 선승인 요청 및 그에 따른 충전 단계를 반복하는 내용의 수단을 개시하고 있다(문단번호 [0009], [0010]).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사용자로 하여금 선불충 전 없이 모바일 전자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카드대금 미변제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승인'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차이점들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신용카드사 서버에 '사용한도 금액'에 대하여 '선승인'을 요청"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의 유효성 및 신용한도'를 확인하는 '인증'을 요청"한다는 점(차이점 1) 및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 내지 7은 '선승인 취소, 사용금액에 대한 매입승인 요청, 새로운 선승인 요청, 재충전 단계' 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들에는 '선승인 취소, 새로운 선승인 요청 단계' 등이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특징적 차이점들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선승인' 방식과 확인대상발명의 '인증'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선승인' 방식과 확인대 상발명의 '인증' 방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이므로, 위 차이점들에도 불 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은 균등관계로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선승인' 방식과확인대상발명의 '인증' 방식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고, 양 발명에 있어서 그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적으로 및) 균등관계로도 이 사건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사용자로 하여금 선불충전 없이 모바일 전자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되,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카드대금 미변제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승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인증' 방식은,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해결과제 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카드대금 미변제에 따른 위험 담보'의 기능을 그 해결과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작용효과 또한 없거나 현저히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해결하려는 과제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다.

②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선승인'은 설정된 '사용한도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자체의 사용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에 미사용금액에 대한 환불 및 선승인의 취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인증'은 신용카드의 유효성 및 신용한도 잔존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 자체의 사용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취소하는 구성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채택한 '인증' 방식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선승인' 방식과 그 자체의 구성 및 효과는 물론 그에 따른 '환불', '선승인 취소'와 같은 추가적 구성의 필요 등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되므로, 양 발명은 과제해결의 수단도 상이하다.

(3) 검토결과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4 내지 7과

문언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 내지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이 사건 제5 내지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마.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 10으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을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 11, 12로 각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 10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잔여 충전 금액에 대한 환불이 요청되면"을 "잔여 충전 금액에 대한 정보가 수신되면"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 11, 12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의 "사용한도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 및 "사용한도 금액"을 각각 "모바일 단말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선승인을 요청" 및 "모바일 단말이 사용한 금액"으로 변경한 것일 뿐으로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선승인'과 '선승인 취소'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동일하다.

따라서 앞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선승인'과 '선승인 취소'에 관한 구성인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 2, 5, 10 내지 12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속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김부한

판사 나상훈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명칭

후불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

2. 상세한 내용

확인대상발명은 캐시비 서버가 결제시스템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성요소 A]

모바일 단말(도면의 'APP' 및 'USIM'), 캐시비 서버(도면의 '캐시비 Server') 및 신용카드사 서버(도면의 '롯데카드')로 구성된 후불결제서비스 시스템에서, 상기 캐시비 서버가 결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단말에는 금액정보가 저장되는 IC카드(도면의 'USIM')가 구비되고, 후불결제서비스용 어플리케이션(도면의 'APP')이 설치됨}

[구성요소 B]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정보, 캐시비카드번호, IC카드식 별정보를 전달받으면,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신용카드정보, 상기 IC카드식별정보 및 미리 설정된 기준금액 정보를 전달하면서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성 여부 및 해 당 신용카드에 대해서 남아있는 신용한도가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IC카드에 충전할 사용한도금액 정보를 그 값이 정해진 상태로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사용한도금액 정보를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전달받지 않고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달하지 않으며, 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인증만 요청하고 선승인을 요청하지 않으며, 인증은 요청 및 완료되더라도 당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구성요소 C]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인증 완료를 통보 받으면, 상기 사용한도금액을 상기 모바일 단말의 IC카드에 충전하는 단계; (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사용한도금액을 상기 모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통보하고, 상기 모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IC카드에 상기 사용한도금액 정보를 충전함)

[구성요소 D]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상기 IC카드에 남아있는 잔여 한도금액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단계; (상기 모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잔여 한도금액 정보를 상기 캐시비 서버로 전달하고, 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앞서 이루어진 인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지 않음)

[구성요소 E]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정보, 상기 IC카드식별정보 및 상기 미리 설정된 기준금액 정보를 전달하면서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성 및 해당 신용카드에 대해서 남아있는 신용한도가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사용한도금액 정보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달하지 않고, 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인증만 요청하고 선승인을 요청하지 않으며, 인증은 요청 및 완료되더라도 당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구성요소 F]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부터 인증완료를 통보 받으면 상기 모바일 단말의 IC카드에 저장되는 금액을 상기 사용한도금액으로 복원하는 단계;(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모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충전숭인을 통보하고, 상기 모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IC카드에 저장되는 금액정보를 상기 사용한도금액으로 복원함)

[구성요소 G]

상기 모바일 단말로부터 복원된 금액정보를 전달받아 매입데이터를 생성하며, 생성된 매입데이터를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전달하여 매입승인을 요청하는 단 계;(상기 캐시비 서버는 상기 모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복원된 금액정보를 전달받음)

[구성요소 H]

상기 모바일 단말의 IC카드와 거래한 거래내역정보를 상기 캐시비 서버로 전달하고 상기 캐시비 서버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결제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결제단말기는 상기 거래내역정보 및 대금지급청구를 일정한 주기로 상기 캐시비 서버로 전송하며

[구성요소 I]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매입승인을 요청하는 단계는 상기 결제단말기로부터 대 금지급청구를 받는 것과 관계 없이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비 서버가 결제를 수행하는 방법.

3. 도면

【도면 1】

